

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4월 1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도 욱)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2006. 2. 24)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임기)
계	9명				
위원	이연리	여	55. 4.1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2008.2.24
위원	이선호	여	48. 2.26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2008.2.24
위원	박궁자	여	44. 7. 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4-4	~2008.2.24
위원	황화자	여	44. 5. 4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0	~2008.2.24
위원	이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5	~2008.2.24
위원	석점숙	여	55. 5.2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7-9	~2008.2.24
시의원	박노설	남	50. 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6-17	~2008.2.24
전문가	김지형	남	62. 4.12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2008.2.24
전문가	장윤석	남	57. 5.11	포항시 남구 지곡동 756	~2008.2.24

□ 참고사항(관계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동의요구 자료중 주소지가 경북 포항시인자가 있는데 협의체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 ○ 위원선정 요구자중 연임되어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 ○ 협의체 위원중 시의원 1인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바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정 위촉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로서 다년간 삼정동 소각장 관련업무에 능통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절대적이었으며,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등 운영에 문제점은 없음. ○ 소각장 주변 주민 6인중 3인은 1997년도부터 위원으로 위촉된바, 통별로 주민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나, 필요시 개정요구 할것임. ○ 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에 선정 요구하여 1인을 통보받았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의 경우 소각장이 소재한 동이므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후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위촉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509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사유

-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2006.2.24)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동의 요구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비고 (임기)
계	9명				
위원	이연리	여	55. 4.1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2008.2.24
위원	이선호	여	48. 2.26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2-1	~2008.2.24
위원	박궁자	여	44. 7. 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4-4	~2008.2.24
위원	황화자	여	44. 5. 4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0	~2008.2.24
위원	이성자	여	64.10.1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5	~2008.2.24
위원	석점숙	여	55. 5.25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7-9	~2008.2.24
위원 (시의원)	박노철	남	50. 6.28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6-17	~2008.2.24
위원 (전문가)	김지형	남	62. 4.12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2008.2.24
위원 (전문가)	장윤석	남	57. 5.11	포항시 남구 지곡동 756	~2008.2.24

□ 참고사항(관계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 관계법규 조문

法	施 行 令																
<p>第17條【周邊影響地域の 결정·告示】 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住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研究機關으로 하여금 環境상 影響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收斂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周邊地域の 環境상 影響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關係전문가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관련)</p> <p>1. 지원협의체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폐 기 물 매 립 시 설</th> <th colspan="2">폐 기 물 소 각 시 설</th> </tr> <tr> <th>구성면적</th> <th>정원</th> <th>처리규모</th> <th>정원</th> </tr> </thead> <tbody> <tr> <td>100만제곱미터이상</td> <td>21인이내</td> <td>1일처리능력 300톤이상</td> <td>15인이내</td> </tr> <tr> <td>100만제곱미터미만</td> <td>15인이내</td> <td>1일처리능력 300톤미만</td> <td>11인이내</td> </tr> </tbody> </table> <p>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p> <p>비 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한다.</p>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이내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이내
폐 기 물 매 립 시 설		폐 기 물 소 각 시 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이상	21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이상	15인이내														
100만제곱미터미만	15인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미만	11인이내														